

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공고

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및 이와 밀접한 전·후방 연관산업에 근로했던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(근로일수 감소자)를 대상으로 고용재진입 및 고용회복 촉진을 위하여 「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 7. 14.

여수상공회의소

1 사업 총괄

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5. 7. 14. ~ 12. 31.
- 신청기간 : 2025. 8. 1. ~ 예산 소진 시 까지
- 지원대상
 - ① 전라남도 주민등록자 *공고일 이전(~25.7.13.) 까지
 - ② 최근 2년 내 여수 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에 근로했던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(근로일수 감소자)
 - 근로자 조건
 - 상용근로자 :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로했던 자로 신청일 현재 실직 상태인 자
(실업급여 수급자 제외)
 - * 공고일 이전(~25.07.13)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(근로일수 감소자)
 - 일용근로자 : 2025년 3월~5월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자
(일용근로·노무제공내역서로 확인,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)

○ 지원내용

세부사업	대상	사업량	지원내용
새출발 희망 지원	실직자 및 일용근로자 (근로일수 감소자)	2,800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 150만원 (1회) 구직 확인서(워크넷·사람인 등), 노조 구직 활동 확인서, 구직 관련 교육 이수증, 기타 구직 활동 입증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지급 ※공고일(25.7.14.)이후 자료만 인정

○ 신청기간 : 세부내용 참고 ※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

○ 추진절차 * 사업공고 이후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사업공고	⇒	지원금 신청	⇒	적격확인	⇒	지원금 지급
7.14.(월)		8.1.(금) ~지원금 소진 시 까지		제출서류 검토, 수시확인		- 지원금 지급 예산 소진 시 까지
여수상공회의소		근로자		여수상공회의소		여수상공회의소

* 지원금 지급 방법: 지원금은 신청 순으로 첨부서류 확인 후 45일 이내 지급하며,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함

○ 지급예시 ※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150만원

구분			지급액(원)
석유화학업종 기업 또는 연관기업 (입증서류 필수) 자격조건: 구직활동 증빙가능자 (새출발 희망 지원)	상용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년 6월 12일 퇴사, 현재 실업상태,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, 실업급여 미수령 	1,500,000
	일용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년 3월~5월 총 근무일수 0일, 소득액 0원 25년 2월 석유화학업종 기업 근무기록 존재 	1,500,000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년 3월~5월 총 근무일수 29일 	1,500,000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년 3월~5월 총 근무일수 30일 	지급불가

2

세부사업 지원 내용

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

1. 지원개요

- 지원규모 : 2,800명
- 모집기간 : 2025. 8. 1. ~ 예산 소진 시 까지
- 지원대상 :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여수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기업에 근로했던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(근로일수 감소자)

① 전라남도 주민등록자

② **최근 2년 내** 여수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에 근로했던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(근로일수 감소자)

구분	필수요건 (아래 요건에 해당해야함)
기업 (택 1)	-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(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등) *기업목록은 여수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(수시 업데이트) - 여수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
근로자	상용 (실직자) - 최근 2년(23.7.14~25.7.13) 내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에 근로했던 실직자 및 근로일수 감소자 * 공고일 이전(~25.07.13) 실직자 대상 (실업급여 수급자 제외)
	일용 2025년 3월~5월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자 (일용근로·노무제공내역서로 확인,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)

<여수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 근로자 인정범위>

- 1) 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석유화학업종(C19, C20)에서 근로했던 자
- 2)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(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)에서 근로했던 자
- 3) 여수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에서 근로했던 자
- 4) 기타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업종과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에서 근로했던 자

<증빙서류>

- 사업자 등록증 : 업종 및 업태 확인, 주소지 확인 등
- 거래관계 서류 :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출입증, 협력사 및 파트너사 확인자료, (택1) 자치단체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, 그 외 여수 국가 산단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

- ➔ 수행기관에서는 1), 2), 3)번 조건을 기준으로 「여수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」 목록을 작성, 홈페이지 게시
- ➔ 홈페이지에 게시한 「여수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」 미 해당자는 4)번 서류를(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) 통해 개별적으로 입증 가능
- 지원내용 : 1인 150만원 지원(1회)

【지원가능 분야 예시】

대상	지원서류	증빙자료	비고
상용근로자 (실직자 및 근로일수 감소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23년 7월 14일 ~ 2025년 7월 13일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(고용보험 상용근로 선택)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직 확인서 (고용 24 및 워크넷 사람인 등 민간 취업포털 발급 가능) 2. 노조 구직 활동 확인서 3. 구직 관련 교육 이수증 4. 기타 구직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	
일용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23년 7월 14일 ~ 2025년 5월 31일 일용근로·노무제공내역서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기타 구직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	

※ 공고일(25.7.14.)이후 자료만 인정

2. 지원절차



* 지원금 지급 방법: 지원금은 신청 순으로 첨부서류 확인 후 45일 이내 지급하며,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함

3. 신청 및 제출서류

□ 신청 · 선정

- (신청방법) 월~금 08~17시 방문 접수 (공휴일 제외)
- (접수처) 여수시 좌수영로 962-12, 1층
- (문의처) 여수상공회의소 (061-641-4001~4004, 4006)
- (선정통보) 지원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지원금 지급
- (제출서류) ※ 여수상공회의소 홈페이지-공지사항 참조

〈제출서류〉

연번	지원분야	서류명	비고	
필수 제출 서류	1	공통	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(서식1)	
	2	공통	주민등록초본, 본인 통장 사본	
	3	공통	사업 참여 사전 확인서(서식2)	
	4	공통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(서식3)	
	5	공통	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(서식4)	
	6	상용 근로자	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2023.7.14. ~ 2025.7.13.) ※ 고용보험 상용근로 선택 ※ 정부24 온라인 발급,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 ※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	
		일용 근로자	일용근로·노무제공내역서(2023.7.14. ~ 2025.5.31) ※ 근로복지공단,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	
7	공통	- 구직 확인서 (고용 24 및 워크넷, 사람인 등 민간 취업포털 가능) - 구직 관련 교육 이수증 - 노조 구직 활동 확인서 - 기타 구직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※ 공고일(25.7.14.)이후 자료만 인정	택1	
※ 공고문에서 제시한「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」미확인자는 아래 자료 제출을 통해 연관성 입증 가능				
8	공통	사업자등록증 (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확인)		
9	공통	최근 2년 내(2023.7.14 ~ 2025.7.13.) 석유화학 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-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출입증, 협력사 및 파트너사 확인 자료, 그 외 여수국가산단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	택1	

3

유의사항

○ 참여 신청 시 지원 제외 대상자 요건 필수 확인

구분	지원 제외 대상자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 근로내역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 ○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*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 ○ 실업급여 등 고용회복지원금 유형 지원금 수급자 *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
상용 근로자 (실직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직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 ○ 2025년 7월 14일 이후 실직한 자
일용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2년 이내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업종이 아닌 타 업종 근로 내역만 있는 경우
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제출서류(신청서 등)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의 내용은 예산사정에 의하여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,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름
- 신청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

서식

**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
지원사업**

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참여 사전 확인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■ 신청자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주민등록등본주소		연락처	

■ 확인내용

확인사항	
(상용)① 현재 사업장에 재직중이거나 지원금 지급(최대 45일) 전 취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? ※지원금 수령 전 취업할 경우, 반드시 고지해야 함.	[] 예 [] 아니오
(일용)① 제출한 일용근로내역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하신 내용과 일치합니까?	[] 예 [] 아니오
② 최근 1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지급 받지 않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	[] 예 [] 아니오
③ 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동의합니다.	[] 예 [] 아니오
④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.	[] 예 [] 아니오
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등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유형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.	[] 예 [] 아니오

▶ (유의사항) 본 사업과 실업급여는 동일한 기간에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.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,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[] 확인

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[] 예 [] 아니오

2025년 월 일

확인자 :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○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『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』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확인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지원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○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연락처, 은행명, 계좌번호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
2.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』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○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
○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: 『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』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확인 등에 활용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지원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○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	
		수행기관	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연락처, 은행명, 계좌번호 등	사업종료일로부터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
3.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

고용노동부,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상기 1~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『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]

성명	주민등록번호	관계	1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(연락처)		본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
2025 년 월 일

여수상공회의소 귀하

